

이화여자대학교 직제

1959. 4. 1. 제정
2017. 10. 23.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직제는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무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직무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교의 교무는 사립학교법, 학교법인 이화학당 정관, 본교 학칙 및 기타 법령이 규정한 경우 외에는 본 직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3조(기구) 본교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기본기관

총장·부총장·교무회의

2. 각 대학원

대학원 · 국제대학원 · 통역번역대학원 · 경영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 교육대학원 · 디자인대학원 · 사회복지대학원 · 신학대학원 · 정책과학대학원 · 공연예술대학원 · 임상보건융합대학원 · 임상치의학대학원 ·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 (개정 2013.2.28., 2016.6.16., 2017.5.15.)

3. 각 대학

인문과학대학 · 사회과학대학 · 자연과학대학 · 엘텍공과대학 · 음악대학 · 조형예술대학 · 사범대학 · 경영대학 · 신산업융합대학 · 의과대학 · 간호대학 · 약학대학 · 스크랜튼대학 (개정 2014.11.21., 2015. 11.27., 2016.6.16.)

3의2. 호크마(HOKMA)교양대학 (신설 2015.11.27.)

4.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개정 2015.11.27.)

4의2. (삭제 2016.2.26.)

5. 교수회의

전체교수회 · 대학교수회 · 대학 전공주임교수(학과장)회 · 전공(학과)교수회 · 교수평의회 (개정 2002.2.4., 2016.12.14.)

6. 중앙행정기관

교무처 · 기획처 · 학생처 · 입학처 · 총무처 · 재무처 · 연구처 · 국제교류처 · 정보통신처 · 대외협력처 · 산학협력단 (개정 2007.2.1)

7. 총장직속기관

비서실 · 교목실 · 감사실 · 교육혁신단 · 학생군사교육단 · 건축본부 (개정 2015.5.11., 2016.9.23.)

8. 부속기관

가. 본부 소속 부속기관

- (1) 이화학술원 (신설 2007.2.1)
- (2) 중앙도서관
- (3) (삭제 2016.2.26.)
- (4) 박물관 · 자연사박물관 · 이화역사관 (개정 2005.4.18)
- (5) R&D혁신단 (신설 2007.9.6)
- (6) 국제하계대학 (신설 2009.3.24)
- (7) 이화리더십개발원 (신설 2007.3.13)
- (8) 경력개발센터 (신설 2003.3.3.)
- (8)의 2 기업가센터 (신설 2015.8.6.)
- (9) (삭제 2015.5.11.)
- (10) 대학건강센터 (개정 2007.10.9)
- (11) 출판문화원 · 이화미디어센터 (개정 2006.1.24., 2016.2.26.)
- (12) (삭제 2007.2.1)
- (13) 언어교육원 · 문화예술교육원 (개정 2013.3.21)
- (14) 발달장애아동센터
- (15) 사회복지관
- (16) 기숙사
- (17) (삭제 2015.2.6.)
- (18) 연구윤리센터 (신설 2015.8.6.)
- (19) 대학교회·다락방전도협회
(개정 2015.8.6.)

나. 대학(원) 소속 부속기관

- (1) 대학원: 대학원생연구지원센터 (신설 2013.12.19.)
- (2) (삭제 2006.1.24.)
- (3) (삭제 2005.4.18)
- (4) 신학대학원: 목회상담센터 (신설 2014.3.13.)
- (5) 정책과학대학원: 여성지도력개발센터 · 기록관리교육원 (개정 2011.6.20)
- (6) (삭제 2005.8.16.)
- (6)의2 인문과학대학: 루체테인문학사업단 (신설 2016.5.13.)
- (7) 엘텍공과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 (신설 2006.7.19., 2016.9.23.)
- (8) 사범대학: 교육연수원 · 영재교육원 (개정 2009.12.21)
- (9) (삭제 2016.2.26.)
- (10) (삭제 2016.2.26.)
- (11) 신산업융합대학: 국제회의센터 · 사회체육교육센터 (신설 2016.2.26.)

(12) 약학대학: PHC 센터 (신설 2012.2.29., 2016.2.26.)

9. 연구기관

가. 본부 소속 연구기관

- (1) 한국문화연구원
- (2) 한국여성연구원
- (3) (삭제 1998.7.20)
- (4) (삭제 2004.7.15)
- (5) (삭제 1999.3.10.)
- (6) 기초과학연구소
- (7) (삭제 1999.3.10.)
- (8) (삭제 2003.11.7.)
- (9) (삭제 2015.11.27.)
- (10) (삭제 2014.10.27.)
- (11) (삭제 2015.3.10.)
- (12) (삭제 2003.11.7.)
- (13) (삭제 2015.10.26.)
- (14) 예술과학융합연구소 (개정 2012.2.13)
- (15) (삭제 2007.8.21)
- (16) 통일학연구원 (신설 2004.7.15.)
- (17) (삭제 2011.5.20)
- (18) (삭제 2014.10.27)
- (19) (삭제 2006.5.9)
- (20) (삭제 2007.3.13)
- (21) 이화어린이연구원 (신설 2006.5.9)
- (22) 세포신호전달계바이오의약연구센터 (신설 2006.9.4)
- (23) 국제재해기상예측기술센터 (신설 2007.2.1)
- (24) 국제개발협력연구원 (개정 2009.9.21)
- (25) 이화인문과학원 (신설 2007.8.21)
- (26) 색채디자인연구소 (신설 2007.8.21)
- (27) 패션디자인연구소 (신설 2007.8.21)
- (28)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소 (신설 2007.10.9)
- (29) 다문화연구소 (신설 2008.8.18)
- (30) 양자메타물질연구센터 (신설 2008.11.7)
- (31) (삭제 2015.10.26.)
- (32) (삭제 2014.10.27.)
- (33) (삭제 2012.7.4)

이화여자대학교 직제

- (34) (삭제 2014.10.27)
- (35) (삭제 2014.10.27)
- (36) (삭제 2014.10.27)
- (37)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신설 2009.5.19)
- (38) 공연문화연구센터 (신설 2009.5.19)
- (39) (삭제 2014.10.27)
- (40) 동아시아연구센터 (신설 2009.12.24)
- (41)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 (신설 2010.3.12)
- (42) 인간생활환경연구소 (신설 2010.3.12)
- (43) 글로벌식품영양연구소 (신설 2010.3.12)
- (44) 조직손상방어연구센터 (신설 2010.11.30)
- (45) 이화CNR5국제공동연구소 (신설 2010.11.30.)
- (46) 세포항상성연구센터 (신설 2013.2.28)
- (47) 뇌융합과학연구원 (신설 2013.2.28.)
- (48) 이화·책스랩암면역치료법연구센터 (신설 2016.4.25.)
- (49) 양자나노과학연구소 (신설 2017.6.22.)
- (50) 혼성계면 화학구조 연구센터 (신설 2017.10.23.)

나. 대학(원)·의료원 소속 연구기관

- (1) 대학원: 이화뮤직웰니스연구센터 (신설 2017.10.23.)
- (2) 국제대학원: 국제통상·협력연구소
- (3) 통역번역대학원: 통역번역연구소 (신설 2005.4.18)
- (4) (삭제 2013.2.28.)
- (5) (삭제 2017.3.16.)
- (6)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 생명의료법연구소 · 젠더법학연구소 (신설 2009.4.14)
- (7) 교육대학원: 예술교육치료연구소 (신설 2009.9.21)
- (8) 인문과학대학: 이화사학연구소 · 국어문화원 · 여성신학연구소 · 영미학융합연구소 · 중국문화연구소 · 지구사연구소 · 철학연구소 · 독일어권문화연구소 · 프랑스어권지역문화연구소 (신설 2015.10.26., 2016.3.31., 2016.6.16.)
- (9) 사회과학대학: 이화사회과학원 (개정 2014.9.26.)
- (10) 자연과학대학: 에코과학연구소 · 수리과학연구소 · 나노·바이오기술연구소 · 지능형나노바이오소재연구센터 · 이화통계연구소 · 청정에너지소재연구소 · 시스템생물학연구소 (개정 2015.3.10., 2017.4.6.)
- (11) 엘텍공과대학: 환경문제연구소 · 융합전자기술연구소 · 컴퓨터그래픽스·가상현실연구센터 ·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 · 식품산업융합기술연구소 · 공학융합연구소 · 미생물바이오시스템공학연구소 · 건축도시융합기술연구소 (개정 2014.10.27., 2015.10.26., 2016.9.23., 2017.4.6., 2017.5.15.)

- (12) 음악대학: 음악연구소·무용학연구소 (개정 2012.2.29)
- (13) 조형예술대학: 도예연구소·융합디자인연구소 (개정 2013.10.15)
- (14) 사범대학: 교육과학연구소·교과교육연구소·특수교육연구소·학교폭력예방연구소 (개정 2012.4.18., 2017.3.16.)
- (15) 경영대학: 경영연구소 (개정 2017.3.16.)
- (16) 신산업융합대학: 건강과학융합연구소·스포츠과학연구소·스마트리빙연구소 (신설 2016.2.26., 2016.6.16., 2017.3.16.)
- (17) 의과대학: 의과학연구소·이화여성암정복특성화연구센터 (신설 2017.3.16.)
- (18) 간호대학: 이화간호과학연구소 (개정 2016.2.26., 2017.3.16.)
- (19) 약학대학: 약학연구소 (개정 2017.3.16.)
- (20) 의료원: 이화융합의학연구원·이화GHIC (신설 2012.2.13., 2015.12.29., 2017.3.16.)

10. 의료원

의료원·의과대학 부속목동병원 (개정 2011.8.26)

11. 부속학교

사범대학 부속 이화·금란고등학교 사범대학 부속 이화·금란중학교
사범대학 부속 초등학교 사범대학 부속 유치원
(개정 2000.10.31)

12. 병설학교

미디어고등학교 (개정 2005.4.18) 영란여자중학교

13. 위원회

인사위원회·연구진실성위원회·정보화추진위원회·기타 각종 위원회
(개정 2007.3.13)

제2장 기구 및 교무분장

제1절 총장

제4조(총장) ① 총장은 본교를 대표하며 교무를 통할한다.

② 총장이 궐위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후임 총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③ 총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학사담당 부총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학사담당 부총장이 없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7.24)

제5조(부총장)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학사·의무·대외 담당으로 구분하여 담당부문의 교무

행정을 관장한다. (개정 2014.11.21)

제2절 교무회의

제6조(교무회의의 조직) 교무회의는 총장·각 부총장·각 대학원장·각 대학장·호크마교양대학장·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장·각 처장·교목실장·중앙도서관장·경력개발센터원장·기숙사관장으로 구성하고 총장은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2.28., 2015.9.18., 2015.11.27., 2016.9.23.)

제7조(교무회의의 권한) 교무회의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교육방침과 정책수립
2. 교무계획과 변경
3. 각종 규칙의 제정 또는 개폐
4. 학생의 상벌
5. 학점기준 제정과 변경
6. (삭제 2017.10.23.)
7. 졸업사정
8. 교직원의 처우 및 후생에 관한 제의
9.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절 각 대학원

제8조(대학원장 등) ① 각 대학원에 원장을 둔다.

② 각 대학원장은 소속 대학원을 대표하며 총장의 명을 받아 그 대학원의 교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7.8.20)

③ 각 대학원에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원장은 대학원장을 보좌하고 대학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9.26.)

[제목개정 2014.9.26.]

제8조의2 (삭제 2014.9.26.)

제9조(행정실) ① 각 대학원에 행정실을 두고 행정실에 팀장을 둘 수 있다. 다만, 의학전문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행정 조직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9.26.)

② 행정실은 대학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에 관한 행정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9.26.)

1. 교직원의 인사 사무 (개정 2014.9.26.)
2.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3. 학적 및 학위에 관한 사항
4. 학생모집 및 입학전형
5. 학생의 면학·장학지도

5의2.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 (신설 2014.9.26.)

6. 대학원위원회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사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4.9.26.]

제9조의2(교실) ① 의과대학 의학과에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실을 두고 각 교실에 주임교수를 둔다. (개정 2017.5.15.)

② 의과대학 의학과 교실 주임교수는 의과대학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7.5.15.)

1. 교육과정의 편성 및 교수배정
2. 교실내 교직원의 통솔
3. 교실관계 인사 추천
4. 기타 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7.8.20.]

제4절 각 대학

제10조(대학장 등) ① 각 대학에 학장을 둔다.

② 각 대학장은 소속 대학을 대표하며 총장의 명을 받아 그 대학의 교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7.8.20)

③ 각 대학에 부학장을 둘 수 있으며, 부학장은 대학장을 보좌하고 대학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9.26.)

[제목개정 2014.9.26.]

제11조(대학의 조직) ① 각 대학에 학칙에 규정된 학부 및 전공 또는 학과를 두고, 학부에 학부장을, 전공에 전공주임교수를, 학과에 학과장을 각각 둔다. (개정 2007.8.20)

② 각 대학에 행정실을 두고 행정실에 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9.26.)

③ 제2항의 기구 외에 본교 전체의 교직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총괄하기 위하여 교직부를 사범대학에 두고 교직부에 부장을 둔다. (개정 2009.12.24)

제12조(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직무) 각 학과장은 소속 대학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7.8.20)

1. 학사계획
2. 교육과정안의 편성 및 교수배정
3. 학사관계 인사 상신
4. 과내 교원의 통솔
5. 학생의 학습과 생활지도
6. 학생의 장학지도
7. 학생 과외활동지도

제13조 (삭제 2007.8.20)

제14조(행정실) 각 대학 행정실은 학장의 명을 받아 해당 대학의 다음 사항에 관한 행정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9.26.)

1. 교육과정안의 편성 및 교수배정
2. 학사관계 인사 사무
3. 교과목 등록 및 학생 성적에 관한 사항
4. 수업실태 파악
5. 휴학·복학 및 퇴학에 관한 사항
6. 학생생활지도·과외활동·면학 및 장학지도
7. 학생신상조사 및 신상카드 관리
8. 대학 학생회의 지도 및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 8의2.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 (신설 2014.9.26.)
9. 대학교수회 및 학과장회에 관한 사항
10. 기타 대학 및 소속 학과의 일반행정

[제목개정 2015.2.6.]

제15조(교직부장의 직무) 교직부장은 사범대학장의 명을 받아 교직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9.12.24)

제4절의2 호크마교양대학 (신설 2015.11.27.)

제15조의2(호크마교양대학장 등) ① 호크마교양대학에 학장을 둔다.

② 호크마교양대학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1.27.]

제5절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개정 2015.11.27.)

제16조(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장) ①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에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장을 두며 원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장 이상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5.2.6., 2015.11.27.)

②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의 교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11.21., 2015.11.27.)

③ (삭제 2003.8.12)

[제목개정 2015.11.27.]

제16조의2(부원장) ①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에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원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차장 이상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5.2.6., 2015.11.27.)

②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 유고시에 그 업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3.8.12.]

제17조(교학실) ①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에 교학실을 두고, 교학실에 실장 또는 주임을 둘 수 있다. (개정 1998.1.9., 2015.11.27.)

② 교학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8.12)

1.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2. 학사관계 인사 사무
3. 수강생의 학사관계 기록 등의 유지 및 관리
4. 수강생의 모집, 전형 및 등록
5. 수업실태의 파악
6. 수강생에 대한 상담, 면학·장학지도
7. 수료의 인정, 수료증의 발부
8.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위원회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27.)
9. 기타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27.)

제5절의2 (삭제 2016.2.26)

제17조의2 (삭제 2016.2.26)

제17조의3 (삭제 2016.2.26)

제17조의4 (삭제 2016.2.26)

제6절 교수회

제18조(전체교수회) 전체교수회는 본교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하며, 본교의 학사운영·학생지도 및 기타 교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1.21)

제19조(대학교수회) 각 대학의 교수회는 당해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1.21.)

1. 학사계획
2. 학생지도
3. 기타 학사에 관한 중요 사항

제20조(대학 전공주임교수(학과장)회) 각 대학의 전공주임교수(학과장)회는 당해 대학의 학장·부학장(또는 학부장) 및 전공주임교수(또는 학과장)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9.26.)

1. 학사계획의 조정
2. 학생지도
3. 기타 학사에 관한 중요 사항

제21조(전공(학과)교수회) 각 전공(또는 학과)의 교수회는 당해 전공(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1.21)

1. 학사계획
2. 교육과정안의 편성 및 교수배정
3. 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학습 및 생활의 지도
5. 학생의 장학지도
6. 학생의 과외활동지도
7. 학술적 협동 연구
8.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전공(또는 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21조의2(교수평의회) ① 교수평의회는 각 대학(원)에서 선출하는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수평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14.]

제7절 중앙행정기관

제22조(교무처장) ① 교무처에 처장을 둔다.

② 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본교의 교무·학적 및 교원인사행정을 관장한다. (개정 2014.11.21)

제23조(교무처부처장) ① 교무처에 부처장을 둘 수 있다.

② 부처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교무처의 조직) ① 교무처에 교원인사팀, 수업지원팀 및 학적팀을 두고 팀에 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10.25., 2015.8.18)

② (삭제 2015.11.27.)

제25조(교원인사팀) 교원인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원의 인사
2. 교원종합 평가 업무
3. 교수연구년제 관련 업무
4. 명예·석좌·특별계약교원 관련 업무
5. 강사 관련 업무
6. 연구원·조교 관련 업무
7. 강사료 관련 업무
8. 교무회의록의 보관 및 기타 교무회의에 관한 사항
9. 전체교수회에 관한 사항
10. 교원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11. 교수연구실 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2.26.)

12. 기타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2.26.)

(전문개정 2015.8.18.)

제25조의2(수업지원팀) 수업지원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칙개정 발의
2. 강의평가 업무
3. 교과과정의 편성 및 강좌의 설치와 관리 (개정 2016.2.26.)
4. 수업계획 및 수업시간표의 편성 및 운영
5. 강의실 및 실험실 배정
6. 학사운영 계획 수립 및 조정
7. 계절학기 운영
8. 특별시험 관련 업무
9. (삭제 2016.2.26.)
10. 초과 강의로 관련 업무
11. 학생·연구조교 관련 업무
12. (삭제 2015.11.27.)
13. (삭제 2016.2.26.)
14. 입학식 관련 업무 (개정 2016.2.26.)
15. 교육과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16. (삭제 2016.2.26.)
17. 기타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5.8.18.]

제26조(학적팀) 학적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적 생성, 학적부의 작성 및 관리 (개정 2016.2.26.)
2. 수료, 진급, 졸업사정 및 졸업 관련 업무 (개정 2012.10.25)
3. 수강 신청, 변경 및 철회 관련 업무 (개정 2012.10.25)
4. 전공결정, 변경 및 전과 관리 (신설 2012.10.25)
5. 부전공 및 복수전공 관련 업무
6. (삭제 2012.10.25)
7. 성적관리 (개정 2012.10.25)
8. 학기우등생 선정 및 학사경고 (개정 2012.10.25)
9. (삭제 2012.10.25)
10. 학점인정 및 관리 (신설 2012.10.25)
11. 제적 및 자퇴 (개정 2012.10.25)
12. 휴학 및 복학
13. 편입학 및 재입학 (개정 2012.10.25)

이화여자대학교 직제

14. 학석사연계과정 선발 및 관리 (신설 2012.10.25)
15. 교원자격증 및 평생교육사자격증 관련 업무 (신설 2012.10.25)
16. 학적 관련 각종 명부 작성 (개정 2012.10.25)
17. 학적 관련 통계 업무 (개정 2012.10.25)
18. 학적 관련 제 증명 관리 업무 (개정 2012.10.25)
19. 보존용 학적 자료 관리 (개정 2012.10.25., 2016.2.26.)
20. (삭제 2012.10.25)
21. (삭제 2012.10.25)
22. 교원양성위원회 관련 업무 (신설 2012.10.25.)
23. 학위수여식 관련 업무 (신설 2016.2.26.)
24. 기타 학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2.26.)

제27조(기획처장) ① 기획처에 처장을 둔다.

- ② 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본교 기획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1997.3.25., 2014.11.21)

제28조(기획처부처장) ① 기획처에 부처장을 둘 수 있다.

- ② 부처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4.3)

제29조(기획처의 조직) ① 기획처에 기획팀, 평가팀, 홍보팀 및 콘텐츠팀을 두고 팀에 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3.13.)

- ② 기획처에 이화웰컴센터를 두고, 이화웰컴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처장 또는 부처장으로 한다. (신설 2013.7.4.)

제30조(기획팀) 기획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0.25)

1. 대학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 (개정 2012.10.25)
2. 대학운영에 관한 전략기획 및 정책개발 (신설 2012.10.25)
3. 대학·학과의 설치와 폐지 (신설 2012.10.25)
4. 학생정원 관리 (신설 2012.10.25)
5. (삭제 2012.10.25)
6. 기구의 설치와 직제의 개편
7. 각 부서간의 업무 조정
8. 각종 규칙의 제정·개폐·관리 및 편찬 관련 업무
9. 공간의 중·장기 기획 및 조정과 배정
10. (삭제 2012.10.25)
11. (삭제 2012.10.25)
12. 소송 관련 업무 (신설 2012.10.25)
13. 법인 관련 업무
14.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신설 2012.10.25)

15. 기획위원회에 관한 사항
16. 편제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신설 2013.7.4.)
17. 규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18. (삭제 2012.10.25)
19. 기타 기획에 관한 사항

제30조의2(평가팀) 평가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운영에 관한 분석 및 평가
2. 특성화 전략의 수립 및 추진
3. 대학자체평가 관련 업무
4. 국내외 기관의 대학평가 대응 계획 수립 및 추진
5. 재정지원사업 관련 업무
6. 대학정보공시
7. 각종 통계의 수집 및 분석
8. 연차보고서 등의 발간
9. 자체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기타 평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2.10.25)

제31조(홍보팀) 홍보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0.25.)

1. 홍보 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각 부서 홍보활동의 조정
3. 홍보 및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정리
4. 교내외 언론기관과의 협조
5. 교내외 홍보용 간행물의 발간
6. (삭제 2014.3.13.)
7. (삭제 2012.10.25.)
8. 홍보위원회에 관한 사항
9. 기타 홍보에 관한 사항

제31조의2(콘텐츠팀) 콘텐츠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1.21)

1. 콘텐츠 전략 및 정책 수립
2. 콘텐츠 사업 기획
3. CMS(Contents Management System)의 운영
4. 콘텐츠 개발 및 운영
5. 콘텐츠 활성화 지원
6. 기타 콘텐츠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3.13.]

제31조의3(이화웰컴센터) 이화웰컴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13.)

1. 캠퍼스 안내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이화웰컴센터 전시 콘텐츠 개발·관리
3. 이화웰컴센터 공간 운영
4. 이화웰컴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화웰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7.4.]

제32조(학생처장) ① 학생처에 처장을 둔다.

- ② 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본교 학생지도, 장학지도, 사회봉사 및 학생상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11.21)

제33조(학생처부처장) ① 학생처에 부처장을 둘 수 있다.

- ② 부처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4.3)

제34조(학생처의 조직) ① 학생처에 학생지원팀, 장학복지팀 및 사회봉사팀을 두고 팀에 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10.25)

- ② 학생처에 학생상담센터를 두고, 학생상담센터에 소장과 실장을 둘 수 있다. 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하고, 실장은 특별계약교원 또는 연구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4.14)

- ③ 학생처에 양성평등센터를 두고, 양성평등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본항신설 2007.9.6)

- ④ 학생처에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두고,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본항신설 2008.11.7)

제35조(학생지원팀) ① 학생지원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면학 및 생활 지도
2. 학생 개인정보 관리 및 학생 통계 (개정 2012.10.25)
3. 학생의 상벌
4. 총학생회 활동 지도
5. 학생단체의 과외활동, 국내외 연수 지도 (개정 2012.10.25)
6. 신입생 환영행사 및 학교적응 지원 (개정 2012.10.25)
7. (삭제 2012.10.25)
8. 학생의 간행물 및 게시물 지도
9. 중앙지도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2.10.25)
11. (삭제 2012.10.25)
12. (삭제 2012.10.25)
13. (삭제 2012.10.25)
14. (삭제 2012.10.25)

15. 각종 증명서의 발급
16. 학생민원의 접수·처리
17. 학생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의 제공
18. 학생문화관 관리 (개정 2012.10.25)
19. 기타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0.25)
- ② 학생지원팀은 학적에 관한 증명의 발급과 조회 등에 관하여 다른 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아 행할 수 있다. (개정 2012.10.25)

제35조의2(장학복지팀) 장학복지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학금 운영계획 및 정책 수립
2. 교내외 장학금 수혜자 선발 및 지급
3. 교외 장학금 유치 및 교외 재단 관리
4. 총장학금 예·결산에 관한 사항
5. 학자금 대출 추천 및 지원
6. 중앙장학위원회에 관한 사항
7. 기타 장학 업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2.10.25.]

제36조 (삭제 2003.3.3)

제37조(사회봉사팀) 사회봉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봉사기관의 선정 및 협력
2. 사회봉사 프로그램 조사 및 개발
3.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생의 관리
4. 사회봉사 관련 교육 및 홍보
5. 자원봉사자 모집, 봉사 현장 알선 및 사후 관리
6. (삭제 2008.11.7)
7. 기타 학생봉사활동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0.25)

제37조의2(학생상담센터) 학생상담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0.25)

1. 상담(개인, 집단) 실시 및 관리
2. 각종 심리검사의 실시 및 해석
3. 각종 특강 및 워크숍 시행
4. 상담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 실시
5. 개인 및 집단지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간행
6. 상담 수련생 교육 관련 업무
7. 상담 통계 수집 및 분석
8. 기타 학생 상담에 관한 사항

제37조의3(양성평등센터) 양성평등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예방 교육 및 간행물 발간 업무 (개정 2014.3.13.)

2. 양성평등 관련 상담 제반 업무
3. 성희롱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4. 기타 양성평등 업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2.10.25.]

제37조의4(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0.25)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2. 교직원·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8조(입학처장) ① 입학에 처장을 둔다.

- ② 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본교의 입학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11.21)

제39조(입학처부처장) ① 입학처에 부처장을 둘 수 있다.

- ② 부처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4.3)

제40조(입학처의 조직) 입학처에 입학팀을 두고 팀에 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0. 27.)

제41조(입학팀) 입학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입학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2. 입학 전형 관리
3. (삭제 2012.10.25)
4. 입학 제도에 관한 연구
5. (삭제 2012.10.25)
6. (삭제 2012.10.25)
7. (삭제 2012.10.25)
8. 입학에 관한 자료의 관리 및 보존 (개정 2014.10.27.)
- 8의2. 입학 홍보 업무 (신설 2014.10.27.)
- 8의3. 입학 상담 업무 (신설 2014.10.27.)
9. 입학사정관에 관한 사항
10.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11.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27.)
12. 기타 입학에 관한 사항

제41조의2 (삭제 2014.10.27.)

제42조(총무처장) ① 총무처에 처장을 둔다.

- ② 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본교의 일반 사무·직원 인사 및 후생복지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11.21)

제43조(총무처부처장) ① 총무처에 부처장을 둘 수 있다.

② 부처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4.3)

제44조(총무처의 조직) 총무처에 총무팀, 인사팀 및 관재팀을 두고 팀에 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10.25)

제45조(총무팀) 총무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0.25)

1. 직인 관리
2. 각종 직인 등록 및 폐기
3. 문서 수발 통제 및 관리
4. 경비 업무
5. 안전관리업무 총괄
6. 소방업무
7. 재난대응 업무
8. 보안에 관한 사항
9. 비상계획
10. 민방위
11. 주차관리
12. 교내 전화 관련 업무
13. 교내 방역 및 미화 업무
14. 폐수 및 폐기물 관리
15. 교내 게시물 관리
16. 인쇄실 관리
17. 우편물 관리
18. 교직원 경조사 관련 업무
19. 교내 직영식당 운영
20. 수련관 운영
21. 기타 타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6조(인사팀) 인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원 임면 관련 업무
2. 법인 인사 관련 업무
3. 직원 평가 관련 업무 (개정 2012.10.25)
4. 직원의 상벌 관련 업무
5. 직원 복무(근태·출장) 관련 업무 (신설 2012.10.25)
6. 직원의 교육 및 연수
7. (삭제 2012.10.25)
8. (삭제 2012.10.25)
9. 교직원의 급여 관련 업무 (신설 2012.10.25)

10. 교직원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관련 업무
11. 교직원의 사회보험 관련 업무
12. 직원 노동조합 관련 업무
13. 직원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14. 기타 직원인사에 관한 사항

제46조의2(관재팀) 관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용기본재산 취득 및 처분
2. 교지 및 교사시설 관리
3. 중앙행정기관, 신축 건물 비품 매입
4. 물품 검수 및 비품 등재
5. 관재 창고 관리 및 불용품 처리
6. 재물 조사 및 관리
7. 공간 변동 사항 관리
8. 교육·연구기자재 통관 및 사후 관리
9. (삭제 2014.11.21)
10. (삭제 2014.11.21)
11. 기타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제47조 (삭제 2012.10.25)

제48조(재무처장) ① 재무처에 처장을 둔다.

- ② 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본교의 재무 및 재산관리행정을 관장한다. (개정 2014. 11. 21)

제49조(재무처부처장) ① 재무처에 부처장을 둘 수 있다.

- ② 부처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4.3)

제50조(재무처의 조직) ① 재무처에 예산팀, 회계팀, 시설팀 및 구매팀을 두고 팀에 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10.25)

- ② 재무처에 자금팀을 두고 팀에 팀장을 두며, 팀장은 처장 또는 부처장으로 한다.
(개정 2012.10.25)

- ③ (삭제 2008.5.21)

제51조(예산팀) 예산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0.25)

1. 예산 편성
2. 예산 조정·평가 및 분석
3. 예산 집행 및 통제
4. 재무회계
5. (삭제 2012.10.25)
6. (삭제 2012.10.25)

7. (삭제 2012.10.25)
8. 학생등록금, 각종 수수료, 제보수의 책정
9.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기타 예산 관리에 관한 사항

제52조(회계팀) 회계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0.25)

1. 수입, 지출에 관한 회계 업무 및 결산
2. 등록금 등 각종 수입금 수납
3. 경상자금 관리
4. 유가증권 관리
5. 회계장표 관리
6. 법인카드 발급 및 관리
7. 원천세, 부가가치세 업무
8. 산학협력단 회계 업무 및 결산
9.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제53조 (삭제 2000.3.24)

제54조 (시설팀) 시설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0.25)

1. 공사계획 수립 및 공사 제반 업무
2. 건축물, 구축물의 보수 및 유지 관리
3. (삭제 2012.10.25)
4. 전기 및 전화 시설 유지 관리
5. (삭제 1995.11.13)
6. 냉난방 및 상하수도 유지 관리
7. 조경 및 수목 관리
8. (삭제 2012.10.25)
9. (삭제 2012.10.25)
10. 에너지 관리 (신설 2012.10.25.)
11. 기타 학교 시설에 관한 사항

제55조(구매팀) 구매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0.25)

1. 기계기구, 집기비품 구매 관련 업무
2. 일반·영선 소모품 구매 관련 업무
3. 공사,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관련 업무
4. 불용품의 매각 및 폐기업체 선정 업무
5. 편의시설 임대 관련 업무
6. 기타 구매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제55조의2(자금팀) 자금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삭제 2012.10.25)

3. 기타 자금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4.8.25)

제55조의3 (삭제 2008.5.21)

제56조(연구처장) ① 연구처에 처장을 둔다.

② 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본교의 연구개발 및 지원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11.21)

제57조(연구처부처장) ① 연구처에 부처장을 둘 수 있다.

② 부처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4.3)

제58조(연구처의 조직) 연구처에 연구진흥팀과 연구지원팀을 두고, 팀에 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10.25)

제59조(연구진흥팀) 연구진흥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 진흥 및 기획업무 (개정 2004.8.25)
2. 연구 재원의 확충 (개정 2004.8.25)
3. (삭제 2012.10.25)
4. (삭제 2012.10.25)
5. 연구기관의 설립 및 폐지의 검토 및 관리 (개정 2012.10.25)
6. (삭제 2014.10.27.)
7. 박사후과정연구원 관련 업무 (개정 2004.8.25)
8. 연구처 소관 각종 위원회 관련 업무 (개정 2004.8.25)
9. 기타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4.8.25)
10. (삭제 2004.8.25)
11. (삭제 2004.8.25)
12. (삭제 2004.8.25)
13. (삭제 2004.8.25)
14. (삭제 2004.8.25)
15. (삭제 2004.8.25.)

제59조의2(연구지원팀) 연구지원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내 연구비 관리
 2. 연구기관 운영비 관리
 - 2의2. 연구 관련 전산 자료 관리 (신설 2014.10.27.)
 3. 기타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 [본조신설 2012.10.25.]

제59조의3(국제교류처장) ① 국제교류처에 처장을 둔다.

② 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본교의 국제화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11.21)

제59조의4(국제교류처부처장) ① 국제교류처에 부처장을 둘 수 있다.

② 부처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0.25)

제59조의5(국제교류처의 조직) 국제교류처에 국제교류팀을 두고 팀에 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10.25)

제59조의6(국제교류팀) 국제교류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0.25)

1. 국제화 전략 추진에 관한 사항
2. 외국대학(기관)과의 협정·교류 및 의전 업무
3. 본교생 해외 교환·방문학생(계절학기 과정 교육 포함) 파견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교환·방문학생 관련 사항
5.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업무
6. 국제교류 장학 업무
7. 기타 국제화에 관한 사항

제59조의7(정보통신처장) ① 정보통신처에 처장을 둔다.

② 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본교의 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11.21)

제59조의8(정보통신처부처장) ① 정보통신처에 부처장을 둘 수 있다.

② 부처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0.25)

제59조의9(정보통신처의 조직) 정보통신처에 정보인프라팀과 정보시스템개발팀을 두고 팀에 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2.6., 2016.2.26.)

제59조의10 (삭제 2016.2.26.)

제59조의11(정보인프라팀) 정보인프라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2.6., 2016.2.26.)

1. 정보화 발전계획 수립
2.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정책수립 및 관리
3. 포털·그룹웨어 관리 및 운영
4.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5. 정보화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정보시스템 서버 관리 및 운영
7.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8.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9. 공용 소프트웨어 도입 및 관리
10.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및 운영
11. IT-One-Stop 서비스센터 운영
12. 기타 정보화 기획 및 정보인프라 관리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5.2.6.]

제59조의12(정보시스템개발팀) 정보시스템개발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2.6.)

1. 통합행정시스템 구축 및 관리
2. 통합행정시스템 보안 및 권한 관리
3. 통합행정시스템 표준화 및 개발기술 고도화
4. 입학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5. 교내외 시스템 연동 지원
6. 기타 정보시스템 개발에 관한 사항

제60조(대외협력처장) ① 대외협력처에 처장을 둔다.

② 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본교의 대외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11.21)

제61조(대외협력처부처장) ① 대외협력처에 부처장을 둘 수 있다.

② 부처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2.4)

제62조(대외협력관련 위원회) 대외협력처에 대외협력자문위원회 및 대외협력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7.3.25)

제62조의2(대외협력처의 조직) 대외협력처에 대외협력팀을 두고 팀에 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10.25)

제63조(대외협력팀) 대외협력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0.25)

1. 대외 전략의 수립, 집행 및 평가
2. 협력사업의 개발, 집행 및 사후관리
3. 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
4. 학교채 업무
5. 대외협력관련 위원회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외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1997.3.25)

제63조의2(산학협력단장) ①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둔다.

②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본교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11.1.)
[본조신설 2004.1.19.]

제63조의3(산학협력단부단장) ① 산학협력단에 부단장을 둘 수 있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4.1.19.]

제63조의4(산학협력단의 조직) 산학협력단의 조직에 관하여는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4.1.19.]

제8절 총장 직속기관

제64조(비서실) ① 비서실은 총장 소속하에 두고 비서실에 실장을 둔다.

② 비서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총장의 공사신 처리
2. 내빈 응접 및 홍보
3. 기타 총장이 명하는 사항

(개정 1997.3.25)

제65조(교목실) ① 교목실은 총장 소속하에 두고 교목실에 교목실장을 두며, 실장 밑에 교목을 둘 수 있다.

② 교목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교생활에 관한 연구 및 지도
2. 예배에 관한 계획 및 운영
3. 각종 종교행사의 주관
4. 종교위원회에 관한 사항
5. 기타 신앙생활에 관한 사항

(개정 1997.3.25)

제65조의2(감사실) ① 감사실은 총장 소속하에 두고 감사실에 실장을 둔다.

② 감사실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교의 청탁방지담당관을 겸직한다. (신설 2016.9.23.)

③ 감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9.23.)

1. 업무감사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3. 청탁방지담당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16.9.23.)
4. 기타 총장이 명하는 사항 (개정 2016.9.23.)

[본조신설 2004.1.19.]

제65조의3(교육혁신단) ① 교육혁신단은 총장 소속하에 두고 교육혁신단에 단장을 둔다.

② 교육혁신단에 교육혁신센터, MOOC센터를 두고 센터에 센터장 및 팀장을 둘 수 있다.

③ 교육혁신단에 THE인재양성총괄본부, 엘텍융합교육혁신본부를 두고 본부에 본부장 및 팀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15.8.6., 2016.6.16.)

④ 교육혁신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8.6.)

(본조신설 2015.5.11.)

제65조의4(학생군사교육단) ① 학생군사교육단은 총장 소속하에 두고 학생군사교육단에 단장을 둔다.

② 학생군사교육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군사관후보생 교육훈련 및 훈육지도

이화여자대학교 직제

2. 학군사관후보생 선발 및 예비후보생 관리 업무
3. 군장학생 선발 및 관리 업무
4. 학교에 소속된 군 위탁생 관리 업무
5. 기타 학군사관후보생 관련 업무

[본조신설 2016.9.23.]

제65조의5(건축본부) ① 건축본부는 총장 소속하에 두고 건축본부에 본부장을 둔다.

② 건축본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곡 소재 의과대학 설계 및 시공 등에 대한 감독
2. 기타 마곡 소재 의과대학 건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5.11., 2016.9.23.)

제9절 부속기관

제66조(부속기관) 제3조제8호가목의 부속기관은 총장 소속하에 두고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각각 따로 정한다. (개정 1997.3.25)

제10절 연구기관

제67조(본부 소속 연구기관) 제3조제9호가목의 본부 소속 연구기관은 총장 소속하에 두고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각각 따로 정한다.

(개정 1997.3.25)

제68조(대학(원) 및 의료원 소속 연구기관) 제3조제9호나목의 대학(원)·의료원 소속 연구기관은 각각 당해 대학(원)장 및 의료원 소속하에 두고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각각 따로 정한다. (개정 2001.4.6)

제11절 의료원

제69조(의료원) 의료원은 의무담당부총장 소속하에 두고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7.3.25)

제70조(부속병원) 의과대학 부속목동병원은 의료원장 소속하에 두고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8.26)

제12절 부속학교

제71조(부속학교) 사범대학의 부속 이화·금란고등학교, 부속 이화·금란중학교, 부속초등학교 및 부속유치원은 사범대학장 소속하에 두고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

정 2005.4.18)

제13절 병설학교

제72조 (삭제 2000.10.31)

제73조(영란여자중학교·미디어고등학교) 미디어고등학교와 영란여자중학교는 총장 소속하에 두고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5.4.18)

제14절 위원회

제74조(인사위원회) ① 인사위원회는 본교 교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7.3.25)

제75조(정보화추진위원회) ① 정보화추진위원회는 본교의 교육, 연구 및 행정 등 제반 정보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정보화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8.1.9)

제76조(각종 위원회) ① 각종의 위원회는 각 분야의 교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②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7.3.25)

제3장 직종·직명·임무

제77조(직종) ① 본교 교직원은 교원 및 사무직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7.3.25)

② 사무직원은 일반직·기술직·시설관리직 및 지원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7.3.25., 2016.2.26., 2016.9.23.)

제78조(직명) ① 교원의 직명은 교수·부교수·조교수·연구원 및 조교로 구분하고, 연구원은 경력직연구원(전산직연구원 포함)과 계약직연구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10.25)

② 사무직원의 직급 및 직명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4.21., 2016.2.26., 2016.9.23.)

제79조(임무) ① 교수·부교수·조교수는 교수·연구·지도 및 기타 학사업무를 담당하고, 연구원 및 조교는 교수·부교수·조교수의 지도를 받아 그 담당업무를 보좌한다. (개정 2014. 11. 21)

② 사무직원은 소속 장의 명을 받아 소관 부서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1997.3.25)

제80조(임시직) ① 총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직으로 고문·촉탁·객원교원 또는 시간강사를 위촉하거나 각종 사무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직제

- ②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직으로 각종 사무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1997.3.25)

제81조(정원) 교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7.3.25)

제82조(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상벌·퇴직금) 교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상벌 및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7.3.25)

제83조(임기) ① 각 부총장, 각 대학원장, 각 대학장, 의료원장 및 각 부속병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② 각 부속학교장 및 병설학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보직자의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④ 총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또는 해촉 제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2.24.)

부칙(1959. 4. 1 제정)

이 직제는 195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3. 29 전문개정)

이 직제는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5. 20 개정)

이 직제는 199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12. 9 개정)

이 직제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 11. 13 개정)

이 직제는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6. 5 개정)

이 직제는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10. 9 개정)

이 직제는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3. 25 개정)

이 직제는 1997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1. 9 개정)

이 직제는 1998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3. 13 개정)

이 직제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7. 20 개정)

이 개정직제 중 제3조 제8호와 제9호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제32조와 제34조 내지 제37조의 2는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조 제12호와 제72조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8. 5 개정)

이 직제는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3. 10 개정)

이 직제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10. 15 개정)

이 직제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 18 개정)

이 직제는 199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 28 개정)

이 직제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3. 24 개정)

이 직제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4. 3 개정)

이 직제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7. 6 개정)

이화여자대학교 직제

이 직제는 200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7. 24 개정)

이 직제는 2000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0. 31 개정)

이 직제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1호 내지 제12호 및 제72조의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4. 6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직제는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9호 나목 중 (5)의 규정은 2000년 11월 8일부터, (16)의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직제의 시행과 동시에 정보전산원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이화여자대학교 학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제6호를 삭제한다.

②이화여자대학교 학칙시행세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2항 중 “교무처차장”을 “교무처부처장”으로 하고, 제43조 제3항 내지 제5항 중 “학생처차장”을 각각 “학생처부처장”으로 한다.

③장학금 지급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중 “학생처차장”을 “학생처부처장”으로 한다.

④교직과정 등 운영세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제3호 중 “교무처차장”을 “교무처부처장”으로 한다.

⑤인사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교무처차장”을 “교무처부처장”으로 한다.

⑥교수연구년제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교무처차장”을 “교무처부처장”으로 한다.

⑦명예교수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교무처차장”을 각각 “교무처부처장”으로 한다.

⑧석좌교수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교무처차장”을 “교무처부처장”으로 한다.

⑨직원인사고과시행세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관련 별표 제1호 내지 제2호 중 “주무차장”을 각각 “주무부처장”으로 하고, 제3호 중 “처·차장급”을 “처·부처장급”으로 한다.

⑩교수연구기금연구비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연구처차장”을 “연구처부처장”으로 한다.

⑪정년보장교원 임용추천위원회 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및 제8조 중 “교무처차장”을 “교무처부처장”으로 한다.

⑫멀티미디어교육원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교무처차장”, “기획처차장”을 각각 “교무처부처장”, “기획처부처장”으로 하고, “정보전산원장”을 “정보통신처장”으로 한다.

⑬언어교육원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기획처차장”을 “기획처부처장”으로 한다.

⑭이화인증원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기획처차장”과 “교무처차장”을 각각 “기획처부처장”과 “교무처부처장으로 하고, “정보전산원장”을 “정보통신처장”으로 한다.

⑮교양영어실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교무처차장”을 “교무처부처장”으로, “기획처차장”을 “기획처부처장”으로 한다.

부칙(2001. 5. 29 개정)

이 직제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2. 4 개정)

이 직제는 2002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2. 14 개정)

이 직제는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3. 7 개정)

이 직제는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5. 30 개정)

①(시행일) 이 직제는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각 부서별 기관기호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연구기관” 중 본부소속 연구기관에 “컴퓨터그래픽스·가상현실연구센터”를 신설하고, 그 기관기호를 “가상연”이라 하며, 대학(원) 및 의료원 소속 연구기관에 “특수교육연구소”를 신설하고, 그 기관기호를 “특교연”이라 한다.

부칙(2002. 7. 25 개정)

①(시행일) 이 직제는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각 부서별 기관기호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연구기관” 중 본부소속 연구기관에 “뉴미디어기술연구소”를 신설하고, 그 기관기호를 “미

디언"이라 한다.

부칙(2002. 8. 5 개정)

①(시행일) 이 직제는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직제 시행 당시 구 규정에 의하여 그 직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구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03. 2. 6 개정)

①(시행일) 이 직제는 200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각 부서별 기관기호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대학(원)"에 임상치의학대학원을 신설하고, 그 기관기호를 "임치원"이라 한다.

"5. 부속기관" 중 대학(원) 소속 연구기관에 "WISE 거점센터"를 신설하고, 그 기관기호를 "와이즈"라 한다.

부칙(2003. 3. 3 개정)

①(시행일) 이 직제는 2003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직제의 시행과 동시에 이화인증원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규칙의 개정) 각 부서별 기관기호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중앙행정기관" 중 학생처의 "취업정보센터" 및 그 기관기호 "취업"을 삭제하고, "5. 부속기관" 중 "이화인증원" 및 그 기관기호 "인증"을 삭제하며, "이화여성리더십개발원" 및 "경력개발센터"를 신설하고, 그 기관기호를 각각 "리더십" 및 "경력"으로 한다.

부칙(2003. 8. 1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직제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직제의 시행과 동시에 전문직원개발원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위임전결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2 제1항 관련 별표 제2호 중 "11. 전문직업개발원"을 삭제한다.

②각 부서별 기관기호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부속기관" 중 "이화여성리더십개발원"을 "이화리더십개발원"으로 하고, "전문직업개발원" 및 그 기관기호 "전문직"을 삭제하며, "이화교수학습센터"를 신설하고, 그 기관기호를 "교학습"이라 한다.

부칙(2003. 11. 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직제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직제 시행과 동시에 색채디자인연구소 규정 및 섬유·패션디자인센터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각 부서별 기관기호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연구기관” 중 “색채디자인연구소” 및 그 기관기호 “색디연”, “섬유·패션디자인센터” 및 그 기관기호 “디자연”을 삭제하고, “디자인코리아연구원”을 신설하고 그 기관기호를 “디자연”이라 한다.

부칙(2004. 1. 19 개정)

이 직제는 공포한 날부터 시작한다. 다만, 제3조 제6호 및 제63조의2 내지 제63조의4는 산학협력단 설립등기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3. 9 개정)

①(시행일) 이 직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각 부서별 기관기호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연구기관” 중 대학(원) 및 의료원 소속 연구기관에 “나노·바이오기술연구소”를 신설하고, 그 기관기호를 “나노연”으로 한다.

부칙(2004. 7. 15 개정)

이 직제는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8. 13 개정)

이 직제는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8. 25 개정)

①이 직제는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만, 제50조 제2항, 제52조 및 제55조의2는 2004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0. 11 개정)

이 직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2. 16 개정)

①(시행일) 이 직제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보과학대학원 폐지를 위한 경과조치) 1. 정보과학대학원은 2005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재적생이 모두 졸업하는 시점에서 이를 폐지한다.
2. 2005학년도부터 정보과학대학원의 폐지시점까지 정보과학대학원장은 정책과학대학원장이 겸임한다.

이화여자대학교 직제

부칙(2005. 1. 21 개정)

- ①(시행일) 이 직제는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시까지의 의과대학 행정체제는 구 직제 시행당시의 의과대학 총 보직자 수 및 그 처우를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칙(2005. 4. 18 개정)

- ①(시행일) 이 직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8호 및 제9호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폐지규정) 이 직제 시행과 동시에 통역번역센터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5. 8. 16 개정)

이 직제는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1. 14 개정)

이 직제는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2. 13 개정)

이 직제는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8호 나목 (6)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 24 개정)

- ①(시행일) 이 직제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사회복지대학원 폐지를 위한 경과조치) 사회복지대학원은 2006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재적생이 모두 졸업하는 시점에서 이를 폐지한다.
- ③(폐지규정) 이 직제의 시행과 동시에 이대학보사 규정 및 국제정보센터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6. 5. 9 개정)

- ①(시행일) 이 직제는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8호 가목 (4), 동조 제9호 가목 (19) 및 동조 동호 동목 (20)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캠퍼스센터건축팀의 존속기한) 캠퍼스센터건축팀은 캠퍼스센터 건축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부칙(2006. 6. 23 개정)

- ①(시행일) 이 직제는 2005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②(폐지규정) 이 직제의 시행과 동시에 신경과학연구소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6. 7. 19 개정)

이 직제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2호 중 경영전문대학원 신설과 경영대학원 폐지는 2006년 9월 1일부터, 동조 동호 중 사회복지대학원 폐지와 제3조 제8호 나목 (5)는 2006년 3월 1일부터, 제3조 제2호 중 정보과학대학원 폐지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9. 4 개정)

이 직제는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9. 13 개정)

이 직제는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2. 1 개정)

①(시행일) 이 직제는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9호 가목 (23)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직제의 시행과 동시에 국제교육원 규정 및 국제교육원 학사운영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7. 3. 13 개정)

이 직제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4. 11 개정)

이 직제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8. 20 개정)

①(시행일) 이 직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9호 가목 (24)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의과대학 의학과에 두는 교실은 의과대학 재적생이 모두 졸업하는 시점에서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7. 8. 21 개정)

①(시행일) 이 직제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9호 가목 (25)및 나목 (4)는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직제의 시행과 동시에 디자인코리아연구원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7. 9. 6 개정)

이화여자대학교 직제

이 직제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0. 9 개정)

이 직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9호 가목 (28)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제3조 제9호 나목 (12)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3. 26 개정)

이 직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5. 21 개정)

이 직제는 2008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8. 18 개정)

이 직제는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9호 나목 (4)는 2008년 4월 1일부터, 제34조 제1항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9. 11 개정)

이 직제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9호 가목 (14)는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0. 15 개정)

이 직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9호 나목 (12)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1. 7 개정)

이 직제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제37조 및 제37조의 3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2. 12 개정)

이 직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8호 나목 (6)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3. 24 개정)

이 직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9호 가목 (35) 및 (36)은 2009년 2월 1일부터, 동조 동호 동목 (33) 및 (34)는 2009년 1월 1일부터, 동조 동호 동목 (31) 및 (32)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4. 14 개정)

이 직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5. 19 개정)

이 직제는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6. 12 개정)

이 직제는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2호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9. 21 개정)

이 직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9호 가목 (24)는 2009년 6월 1일부터, 동조 동호 나목 (5)는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2. 21 개정)

이 직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8호 (6)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2. 24 개정)

이 직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9호 가목 (40)의 시행일은 추후 정한다.

부칙(2010. 3. 12 개정)

이 직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1. 30 개정)

이 직제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2. 11 개정)

이 직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5. 20 개정)

①(시행일) 이 직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9호가목(17) 및 같은 조 같은 호 나목(9)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직제의 시행과 동시에 WISE 거점센터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이화여자대학교 직제

부칙(2011. 6. 20 개정)

이 직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8호나목(3)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8. 26 개정)

이 직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의2호는 2011년 5월 20일부터, 제3조제9호(8)은 2011년 9월 1일부터, 제3조제10호 및 제70조는 201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1. 16 개정)

이 직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9호나목(9)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2. 13 개정)

이 직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9호가목(14)는 2011년 12월 1일부터, 제5절의2 및 제83조제2호는 201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2. 29 개정)

이 직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4. 12 개정)

이 직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7. 4 개정)

①(시행일) 이 직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9호가목(33)은 2012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이 직제의 시행과 동시에 평화학연구소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2012. 10. 25 개정)

이 직제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9호나목(9) 및 (16)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1. 27 개정)

이 직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9호나목(6)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2. 28 개정)

이 직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9호가목(46)은 2012년 9월 1일부터, 제3조제2호, 제3조제9호가목(47), 같은 조 같은 호 나목(3) 및 (7)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3. 21 개정)

이 직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8호가목(13)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7. 4 개정)

이 직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및 제31조의2는 201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0. 15 개정)

이 직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9호나목(4)는 2012년 6월 1일부터, (12)는 2013년 6월 1일부터, (9) 및 (17)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2. 19. 개정)

이 직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8호가목(17)과 나목(1)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제46조의2 제9호 및 제10호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 29. 개정)

이 직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9호나목(8)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3. 13. 개정)

이 직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8호나목(4)는 2014년 3월 1일부터, 제29조제1항, 제31조제6호 및 제31조의2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9. 26. 개정)

①(시행일) 이 직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제3조제9호나목(8)의 시행과 동시에 사회과학연구소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2014. 10. 27. 개정)

①(시행일) 이 직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7호 및 제3조제9호가목(10), (18), (35), 나목(9), (10)은 2014년 9월 1일부터, 제3조제9호가목(32), (34), (36), (39)는 2015년 2월 28일부터,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2는 2014년 11월 1일부터, 제59조, 제59조의

2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본부의 존속기간) 건축본부는 마곡 소재 의과대학 건축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폐지규정) 이 직제의 시행과 동시에 세포신호전달연구센터 규정, 초기우주과학기술연구소 규정, 바이오레독스시스템연구센터 규정, 촉매반응·합성연구센터 규정, 글로벌STS교육연구소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2014. 11. 21. 개정)

이 직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호는 2015년 3월 1일부터, 제31조의2 및 제46조의2는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2. 6. 개정)

①(시행일) 이 직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8호가목(17)은 2015년 2월 28일부터, 제59조의9부터 제59조의12까지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제3조제8호가목(17)의 시행과 동시에 이화RC 시범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2015. 2. 24. 개정)

이 직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3. 10. 개정)

①(시행일) 이 직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9호가목(11)은 2015년 2월 28일부터, 제3조제9호나목(9)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직제의 시행과 동시에 분자생명과학기술원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2015. 4. 21. 개정)

이 직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5. 11. 개정)

①(시행일) 이 직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7호 및 제65조의3은 2015년 5월 1일부터, 제3조제8호가목(9)는 2015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직제의 시행과 동시에 교수학습개발원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2015. 8. 6. 개정)

이 직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8호가목(8)의2는 2015년 9월 1일부터, 제3조제8호가목(18)은 2015년 8월 1일부터, 제65조의3제3항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8. 18. 개정)

이 직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2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9. 18. 개정)

이 직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0. 26. 개정)

이 직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9호가목(13) 및 (31), 나목(7) 및 (10)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1. 27. 개정)

①(시행일) 이 직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호, 제3조제4호, 제6조 중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장, 제5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는 2016년 3월 1일부터, 제3조제3의2호, 제3조제8호가목(3), 제6조 중 호크마교양대학장, 제24조제2항, 제25조의2제12호는 2015년 12월 1일부터, 제3조제9호가목(9)은 2015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직제의 시행과 동시에 교양영어실 규정, 정보통신연구소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2015. 12. 29. 개정)

이 직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2. 26. 개정)

이 직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8호가목(3)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제3조제4호의2, 제5절의2,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는 2016년 2월 29일부터, 제3조제8호가목(11), 제3조제8호나목(9)부터 (12)까지 및 제9호(16)의2, (17), 제59조의9부터 제59조의11까지, 제77조제2항, 제78조제2항 별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3. 31. 개정)

이 직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4. 25. 개정)

이 직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9호가목(48)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5. 13. 개정)

이화여자대학교 직제

이 직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6. 16. 개정)

이 직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9호나목(7), 제65조의3제3항은 2016년 7월 1일부터, 제3조제2호는 2016년 9월 1일부터, 제3조제3호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9. 23. 개정)

이 직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7호, 제65조의4는 2016년 9월 1일부터, 제3조제8호나목(7)과 같은 조 제9호나목(10)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2. 14. 개정)

이 직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3. 16. 개정)

이 직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9호나목(4), (16)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4. 6. 개정)

이 직제는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5. 15. 개정)

이 직제는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6. 22. 개정)

이 직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0. 23. 개정)

이 직제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5.4.21., 2016.2.26., 2016.9.23.)

사무직원의 직급·직명 분류

구 분	직 급	직 명	비 고
일반직 또는 기술직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부 장 부 장 부 장 차장, 과장 과장, 대리 대리, 직원 직 원 직 원	
시설관리직	6등급 - 9등급	시설관리직원	운 전 건 축 전 기 통 신 설 비 조 경 안 전 화 공 비 품 관 리 방 호 교 환 고 용 기 타
지원직	6등급 - 9등급	지원직원	